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2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10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등의 다른 정보취약계층까지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차별금지의 대상을 정보취약계층까지 확대함(안 제2조의2제3항).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2제3항 중 “장애인이” 를 “정보취약계층이” 로 하고, “장애를 이유로” 를 “합리적인 이유 없이” 로 각각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<u>장애인이</u>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<u>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</u>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①~②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정보취약계층이</u> ----- ----- <u>합리적인 이유 없이</u> 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